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188
------------	------

2024년 12월 17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김기덕 의원 외 13명

나. 제안일자 : 2024년 10월 16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27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(2024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기덕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14년 2월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별 공영 및 민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서울주차정보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, 시민들에게 주차장 위치 및 주차요금 등의 이용정보 제공으로 시민 편의는 물론 주차장 이용률 제고
- 최근 IT 등 통신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촉진을 확대하고자,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의 편리성 확대 도모

나. 주요골자

-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조항 신설 (안 제4조의3)
- 상위법령에 맞춰 띄어쓰기 등 수정 (안 제3조 및 제3조의2,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10.23. ~ 2024. 10.27.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⁾

○ 제출의결: 원안 가결

- 서울시는 2014년부터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영주차장(시, 구) 및 민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시 전역에 대해 제공 중에 있으며, 제4조의3조는 기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진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동의함

1) 주차계획과-20611('24.10.30.) “제327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”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주차정보 부재로 인한 불법주차와 배회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유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‘대시민 주차정보안내를 위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’²⁾을 수립하고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 및 홈페이지³⁾를 통해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- 또한,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등의 기능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해 해마다 계획 수립⁴⁾을 통해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이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서울시 정책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임

2) [대시민 주차정보안내를 위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] 주차계획과-4849(2012.4.10.)

- 언제, 어디서, 누구나,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필요한 주차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「통합주차정보시스템」을 구축하여 대시민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용역 시행

3) ‘서울특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’ <https://parking.seoul.go.kr/>

4) [‘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’ 25년도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시행계획] 주차계획과-10125(2024.8.28.)

- 자치구 주차실태자료 실시간 통계관리 및 대시민 주차정보안내를 위해 기존 개발프로그램의 기능개선과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시행

-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4⁵⁾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차장 정보망 구축·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시장 등에게 주차장 운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주차정보 연계 및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안전공단, 자치구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

- 향후 서울시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의 기능 강화가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임

5)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4(주차장 정보망 구축·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 - 이하 생략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1. 제7조에 따른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2.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
3.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.
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8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 경, 김영철, 남창진,
문성호, 민병주, 박승진,
박철성, 서준오, 이승미,
이원형, 이효원, 임종국,
홍국표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2014년 2월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별 공영 및 민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서울주차정보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, 시민들에게 주차장 위치 및 주차요금 등의 이용정보 제공으로 시민 편의는 물론 주차장 이용률 제고
- 최근 IT 등 통신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촉진을 확대하고자,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의 편리성 확대 도모

2. 주요내용

- 가.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조항 신설 (안 제4조의3)
- 나. 상위법령에 맞춰 띄어쓰기 등 수정 (안 제3조 및 제3조의2,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“(주차장수급실태조사)”를“(주차장 수급 실태조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차장수급실태조사(이하 “수급실태조사””를 “주차장 수급 실태조사(이하 “수급 실태조사”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, 같은 호 가목, 같은 항 제2호,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급실태조사”를 각각 “수급 실태조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급실태조사를”을 “수급 실태조사를”로, “수급실태조사원증표”를 “수급 실태조사원증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수급실태조사”를 “수급 실태조사”로 한다.

제3조의2의 제목“(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)”를“(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(이하 “안전관리실태조사””를 “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(이하 “안전관리 실태조사”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안전관리실태조사”를 “안전관리 실태조사”로, “수급실태조사”를 “수급 실태조사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수급실태조사”를 “수급 실태조사”로 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스마트 주차정보 제공) ① 시장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 주차정보를 연계·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안전공단,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주차장수급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3조 및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법 시행규칙“이라 한다)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<u>주차장수급실태조사</u>(이하 “<u>수급실태조사</u>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수급실태조사</u> 대상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,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<u>수급실태조사</u>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생략)</p> <p>2. <u>수급실태조사</u> 시기 : 연중 주차 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</p> <p>3. <u>수급실태조사</u> 내용</p>	<p>제3조(주차장 수급 실태조사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주차장 수급 실태조사</u>(이하 “<u>수급 실태조사</u>”----- -----.</p> <p>1. <u>수급 실태조사</u> -- 가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급 실태조사</u> 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수급 실태조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<u>수급 실태조사</u> --</p>

가. ~ 다. (생략)

4. 수급실태조사 방법

가.·나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,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의2(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)

구청장은 법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(이하 “안전관리실태조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4. 수급 실태조사 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수급 실태조사-----

----- 수급 실태조사 -----

③ 수급 실태조사를 ----- 수급 실태조사원증표-----

④ ----- 수급 실태조사-----

제3조의2(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)

-----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(이하 “안전관리 실태조

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,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70%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태조사”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안전관리 실태조사-----
----- 수급실태조사-----.

제4조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) ① -----
----- 수급 실태조사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3(스마트 주차정보 제공) ① 시장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 주차정보를 연계·제공하기 위하여

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안전공단,
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3(스마트 주차정보 제공)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(도시교통실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4조의3	주차정보 관리안내 시스템 운영(붙임1)	290,954

※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계분석관 김지혜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[붙임 1] 2024년 주차정보 관리안내 시스템 운영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○ 사업기간 : 2024.1. ~ 2024.12.

○ 사업내용 :

-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부문

- 상용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
- 주차관리 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
- 자치구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

-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유지보수 부문

- 상용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
- 앱, 홈페이지 등 주차정보안내 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
- 실시간 주차정보 연계주차장 장애발생시 즉시 정상화 조치

-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의 기능개선, 통계 및 관리 업무

- 서울주차정보안내시스템 웹 접근성 인증 갱신 및 앱 품질인증 인증 및 갱신 수행
- 자치구 주차수급실태조사 자료 활용, 실태조사 웹/앱 패키지 관리
-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평가 관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업무
- 서울열린데이터광장, 서울교통 빅데이터 플랫폼, 빅데이터 통합저장소, 국토교통부 주차정보시스템 등 연계 관리 API 운영 및 지원
-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주차장에 대한 실시간 주차장운영정보 연계 및 기술 지원
- 미 연계된 자치구 관리공단 주차장 실시간 연계 기술 지원 및 연계 에이전트 개발 및 설치 운영
- 25개 자치구 데이터 현행화, GIS 공간분석 및 주제도 작성, 통계분석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개발자 및 운영자 상주
- 실시간 주차정보 연계상황 파악이 어려운 현장에 대한 장애처리 및 현장방문 운영점검
- 민간,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실시간 정보 전송을 위한 방문 및 작업

○ 총사업비 : 290,954천원